

이륜자동차 주간주행등 설치 및 광도기준(제75조의2 관련)

1. 설치기준

가.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

나. 등광색은 백색일 것

다. 설치위치

1) 너비 방향

가) 1개의 독립된 주간주행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·하·측·우측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, 다른 전방등화의 상단에 위치하는 경우 주간주행등의 기준축은 이륜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상에 위치하여야 하고, 다른 전방등화의 수평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서 250밀리미터 이하에 발광면의 끝이 위치할 것

나) 주간주행등이 다른 전방 등화(주행빔 또는 차폭등)와 상호 결합된 경우에도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서 250밀리미터 이하에 발광면의 끝이 위치할 것

다) 1개 또는 2개의 주간주행등이 다른 전방등화와 상호 결합되거나 2개의 주간주행등이 설치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

라) 2개의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광면 간 거리는 420밀리미터 이하일 것. 다만,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(1) 전조등과 그룹, 결합 또는 상호 결합된 경우

(2) 이륜자동차를 길이방향으로 수직횡단면에 투영한 경우 투영된 면 안에 주간주행등이 위치한 경우

2) 높이 방향

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,500밀리미터 이하일 것

라. 관측각도

1) 주간주행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, 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

2) 주간주행등의 발광면은 외측 20도,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

마. 조사 방향

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. 다만,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.

바. 작동조건

- 1) 전조등 점등시 주간주행등은 자동으로 소등될 것. 다만, 전조등의 주행빔을 경고의 표시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) 주간주행등 점등시 후미등은 점등되어야 하며 차폭등과 변호등도 점등될 수 있다.
- 3) 주간주행등이 앞면방향지시등과 설치거리가 4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방향지시등 작동시 이륜자동차 각 측면의 주간주행등은 감광 또는 소등될 수 있다.
- 4) 방향지시등이 주간주행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 작동시 이륜자동차 각 측면의 주간주행등은 소등될 것

사. 표시장치

주간주행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

2. 광도는 별표 6의8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